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۲-۱	기	관	의	장	
선					
람					

정기 제503호 2023. 2. 15.(수)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장수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3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2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28
장수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41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산서면 오성리) · · · · · · · · · · · · · · · · · · ·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장수읍 대성리) · · · · · · · · · · · · · · · · · · ·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고시48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의 고시 ······49
토지 및 물건 조사, 측량 등을 위한 토지 출입공고(동화댐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76
장수군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 지침 ······77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6)

장수군 규칙 제1205호

장수군 조례 •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2023년 2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본청 국, 실, 과장 및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을 "본청의실·국장, 국 주무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행정조직에 맞는 위원회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현재 본청 국, 실, 과장 및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으로 되어있는 심의위원을 변경하여 조례·규칙 심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회의 위원 구성 변경 (안 제2조)
 - 본청의 실·국장, 국 주무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 심의 회의 개회사항 변경 (안 제5조)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변경

장수군 훈령 제605호

장수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장수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2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장수군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원사항"이란 「청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 "주관부서"란 청원서 접수, 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장수군 청원심의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군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 균
-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다고 판단될 때
-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4.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 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5.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

-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에 관한 사항
-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균
-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 ⑤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 ⑥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7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 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 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 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03호			군	보	2023	3. 2. 15.(全)
	[별지 제1	호서식]				
			청원심의	회 검토의견서	1	
	안건					
	일시					
			검 토	. 의 견		
			ما ما ع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심 의 결 과			

< 장수군 청원심의회 위원 >

		심의 의견			
구 분	성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서 명
위원장					
위원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т.	70 12 12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circ
- \circ

3. 개최 이유

- \circ
- \circ

4. 요청 시기

 \circ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_

1. 제정이유

○ 「청원법」전부 개정에 따라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장수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 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제3조)
- 청원심의의 원칙, 청원심의회 구성, 위원의 해촉 (안 제4조~제6조)
- 심의회 심의사항 및 운영 (안 제7조~제8조)
- 심의회 개최 요구, 수당 (안 제9조~제10조)

장수군 공고 제2023-107호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보편적 복지의 소외계층인 청소년에 대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 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등 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 제3조 ~ 제4조)
- 다. 신청주체, 발급신청 및 포인트 지급 방법 (안 제5조 ~ 제7조)
- 라. 카드의 사용처,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 중지 및 환수 (안 제8조 ~ 제10조)
- 마.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준수사항, 지도·감독, 매출금의 지급 (안 제11조 ~ 제14조)
- 바.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주민복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 번호

다. 제출기간 : 2022. 2. 2. ~ 2022. 2. 22.

라.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063-350-2102, 팩스: 063-350-5703)

마. 의견제출 방법: 우편·전화·팩스·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담당자 (전화 063-350-21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나.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안」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ы –
사시합파인 대통	찬성	반대	의	선	비고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청소년이 교육·문화·체육·진로체험·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급한 포인트 충전식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 2. "가맹점"이란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 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하다.
- 제3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부터 18 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지원 기간으로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카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의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 인")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지원대상자 본인
 - 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제6조(발급신청 등)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 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 ① 군수는 카드를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첫 회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카드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제3 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포인트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주기 및 횟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카드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수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가맹점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바우처 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생성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 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1. 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2.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

법으로 취득한 경우

-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
 - 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 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2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 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다.
- 제14조(매출금의 지급) 군수는 카드 포인트 매출금액을 가맹점에서 지정 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 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 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_					(앞
장수군	청	소	년 꿈키울	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 즉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청소년)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신성구군		건ㅠ	□ 세월급	세 월 급 사 ㅠ		
	성	명			생년월일	X X X X X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관	계	□ 본인 □	법정대리인 : -	부[]	모[] 그 외[]
						의 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					계충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변동될 수 있음 .
「장수군 청	소년	꿈키움	음 바우처 카드 7	니원 소데」 제(3조에 따라 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장수군 청 (재)발급을				시원 소데」 세i	3조에 따라 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_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년 월
				시원 소데 , 세6 신 청		
	신청합	합니다		_	인	년 월
(재)발급을				_		년 월 (서명 또는
	신청합	합니다		_	인	년 월 (서명 또는 '
(재)발급을	신청합 성	합니다 명		_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년 월 (서명 또는 *** * * * * * * * * * * * * * * * * *

(뒤쪽)

-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제출서류

-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5.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탁인에게** 양도, 대역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	처 카드 (재)발급 위임장
끼원대상까 (청소년)	성명 :	생년월일 X X X X X X
	성명 :	생년월일 X X X X X X
수임자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X X X X X X
(법정대리인 또는	주소 :	
시설대표자)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리움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위임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장수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수군 청	소년 꿈키움 바우	처 카드 기	l맹점 지정 신청서
1. 가맹점 정보	<u> </u>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2. 계작정보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 매출대금 입금	 	기재 부탁드립니	다.
3. 카드단말기	∥ 정보		
카드단말기 VANA	사명	단말기 관리호 연락처	사
※ 매장 내 카드	트단말기 VAN사명과 연락처	를 반드시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청소년 등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맨전 지전은 시청	성하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 및 매출대금 지급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것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	점 지정	변경 신청시
(기맹점 번호 : 장수 1. 가맹점 정보	– <u>ই</u>)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u>'</u>			
2. 신청사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L ※ 변경사유 :				
「장수군 청소년 등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	원 조례 _」 제11.	조제1항에 따라	라 청소년 꿈키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나.		
			년	월 9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2. 가맹점	하 점 지정서 1부. 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ull Alexi)

별지 제5호서식]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치	터 카드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기맹점 번호 : 장수 - 호)	
1. 가맹점 정보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X X X X X X X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2. 해지사유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해지 신청합니	니다.
	년 월 일
신 청	성 인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반납서류 기맹점 지정서 원본	

[별지 제6호서식]

장수 - 호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서

O 상 호 :

○ 조 재 지 :

○ 정 명: ○ 생년월일(정별): . . .()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 업체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관 련 법 령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 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수군 공고 제2023-109호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 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 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 제3조 ~ 제4조)
- 다.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안 제5조 ~ 제6조)
- 라.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7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 참고)를 장수군수(참조 : 주민복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 기간 : 2023.02.02.~2023.02.22.
- 다. 의견제출할 곳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민원과(주민복지과장)
 - 2) 전 화: 063-350-2016
 - 3) 팩 스: 063-350-5703
 - 4) E-mail: asyvj7@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4. 기 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담당자(전화: 063-350-210
- 6)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 나.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۵۱		מן ד
	찬성	반대	의	선	비고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
 -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	비고
영아종일제,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	가			
	나	「아이돌봄 지원사업	50%	
	다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		
	라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3 *3 .3	성 명]년월일	,	성별 성별
신 청 인	주 소			,		0.2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서비스 유	구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가형 🗌 나형	간제/종일제 령 □ 다형 □ 라형 □
대상자		가형 □ 나형 □ 다형		간제/종일제 등 □ 다형 □ 라형 □		
	1 1			- 2 2 2	가형 🗌 나형	간제/종일제 령 □ 다형 □ 라형 □
연락처	자 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	육공백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아동의 주민등	록상 주소지	에서 함께 거	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서비스 제	공기간 동안	장수군에 🦥	주민등록을 두	두고 계속 겨	주하지 않을 경	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인	· 지급된 지원	금을 환수	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	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						
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N +1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						
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 아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당취임 □ 당취아시 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23 - 131호

장수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2월6일장수군수

□ 자치법규명

○ 장수군 군계획조례

□ 일부개정이유

○ 장수군 거주자는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시 거리이격, 표고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완화된 기준이 있으며 필지분할을 통해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를 방지하고자 2년이내 여러 필지로 분할한 경우는 완화된 허가기준 이 미 적용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으나 분할 목적,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장수군 거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분할 목적 및 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해 예외조항에 소규모발전시설 설치 후를 명시해 장수군 거주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 적용에 불이익이 없도 록 개정 (안 제20조의2제5항제3호)

□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해당없음
- 사전심사: 법제 사전심사 및 규제사전심사(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성별영향분석평가(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팀)

○ 입법예고: 2023. 2. 6. ~ 2023. 2. 25.(20일간)

□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내 불임 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건설교통과장)
 - 전자우편 및 팩스: hwaniya99@korea.kr, 063-350-5719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도시팀 350-2575에 문의바랍니다.
- 붙 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별지서식) 1부.
 - 2.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 3. 신·구조문 대비표. 끝.

	н	A)	1	ч
ı	돧	쐮	- 1	1
	_	_	_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권	비고
사시합用한 대통	찬성 반대		7	견	N 12

【붙임 2】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5항제3호 중 "[다만,"을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 후"로 한다.

별표 27의 장계면의 지역지구명란 중 "금곡리,금덕리,무농리,삼봉리,송천리"를 "금곡리,금덕리,무농리,삼봉리,송천리,월강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_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볕쪼임,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u></u> 을	
3. 장수군에 거주하는 자(3년 이상	3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가 본	
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소득	
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	
인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설
경우 <u>[다만,</u> 2년 이내 한 필지를 여	치후
러 필지로 분할한 경우는 제외하	
며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지구	
및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	
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경우 해당	
마을주민(주민등록상 세대주)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3분의 2 이상	
의 동의를 받아야 함]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별표 27]

<u>읍면별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표고</u> (제20조의2 관련)

읍면별	지역지구명	₩1(m)	117
	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 기준 30m	장수읍행정복지센터
71 2 0	대성리, 식천리, 덕산리, 수분리 외 비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 기준 60m	-415미터
장수읍	덕산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100m	4100101
	대성리, 식천리	대성보건진료소 기준 25m	대성보건진료소 577미터
	수분리	송계마을회관 기준 30m	송계마을회관 530미터
	신창리,하윌리,사상리	-	l
II JIM	봉서리,사계리,이룡리	면사무소기준 30m	산서면사무소
산서면	오산리,동화리,학선리,백문리,마 히리,건지리,오성리,쌍계리	면서무소기준 90m	1500 E
	유정리,국포리,죽산리	면서무소기준 BDm	변암면사무소
번암면	숙림리,노단리,대톤리,논곡리	면사무소 기준 30m	1
	지지리,사암리,교통리,동화리	면사무소 기준 120m	24BD[E]
	도시지역	행정복자센터 기준 20m	
	금꼭리,금덕리,무농리,삼봉리.		1
장계면	송천리	행정복자센터 기준 43m	장계면행정복지센터
0/12	오동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BDm	357DJEH
	명덕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120m	1
	대곡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190m	1
	준송리	면사무소 기준 27m	
	봉덕리,삼고리,남양리,월곡리,		1
	장판리	면사무소 기준 47m	천천면사무소343미터
천천면	비룡리	면서무소 기준 127m	-
	연평리	평지회관 기준 36m	평지회관
	234	경시되는 기군 3001	284D]E-
	오봉리,룡광리	보건진료소 기준 40m	오봉보건진료소 302미터
	침곡리, 호덕리	면사무소 기준 10m	계남면사무소
계남면	화양리,화음리,신전리	면사무소 기준 60m	-/102/1TT
	궁양리,가꼭리,장안리	면사무소 기준 76m	3740161
	물현리,매계리,임평리	-	계묵면사무소
계북면	원존리	면사무소 기준 27m	
	농소리,어전리,양악리	면사무소 기준 37m	473DE

※ 위 기준 표고는 개발행위 대상 필지별 평균표고와 비교한다.

[별표 27]

<u>읍면별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표고</u> (제20조의2 관련)

읍면별	지역지구명	₩1(m)	ב וו	
	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 <u>기준</u> 30m	장수읍행정복지센터	
71 3 0	대성리, 식천리, 덕산리, 수분리 외 비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 <u>기준 60m</u>	415DIEI	
장수읍	덕산리	행정복지센터 <u>기준 100m</u>		
	대성리, 식천리	대성보건진료소 기준 25m	대성보건진료소 577미터	
	수분리	송계마을회관 <u>기준30m</u>	송계마을회관 530미터	
	신창리,하물리,사상리	-	J <u>.</u> .	
of alms	<u>봉서리,사계리,이룡리</u>	면사무소기준 30m	산서면사무소	
산서면	오산리 동화리 학선리 백문리 마 하리 건지리 오성리 쌍계리	면서무소기준 90m	<u>1500]E1</u>	
	유정리,국포리,축산리	면사무소기준 BDm	변암면사무소	
번암면	죽림리 노단리 대론리 논곡리	면사무소 기준 30m	1	
	지지리 사암리 교통리 동화리	면사무소 기준 120m	248DIE1	
	도시지역	행정복자센터 기준 20m.		
장계면	금푸리 금덕리 무농리 삼봉리 송천리 월강리	행정복자센터 기준 43m	장계면행정복자센터	
341	오동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BDm.	357DIE1	
	명덕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120m		
	대곡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190m	1	
	준송리	면사무소 기준 27m		
	봉덕리 삼고리 남양리 월곡리			
	장판리	면사무소 기준 47m		
천천면	비룡리	면사무소 기준 127m		
	연평리	평지회관 기준 36m	평지회관	
	220	양시화된 기준 2000	284DIE1	
	오봉리,용광리	보건진료소 기준 40m	오봉보건진료소 302미터	
	침꼭리, 호덕리	면사무소 기준 10m	계남면사무소	
계남면	화양리 화금리 신전리	면사무소 기준 60m	- 제 급한이구프	
,	궁양리가플리 장안리	면사무소 기준 76m	374DIE1	
	월현리,매계리,임평리	-	계묵면사무소	
계북면	원존리	면사무소 기준 27m]	
	<u> 농소리 어전리 양악리</u>	면사무소 기준 37m	473DIE3	

※ 위 기준 표고는 개발행위 대상 필지별 평균표고와 비교한다.

장수군 공고 제 2023- 147호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장수사과 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소속단체 명칭 변경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소속단체 명칭을 현행화하고 행정담당부서 업무이관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O 발전위원회 구성 위원 소속단체의 현행화(안 제11조제2항제3호)
 - "장수사과영농조합대표, 한국사과협회장수군지회장"을 "장수사과원예협동 조합대표, 한국사과생산자협회장수지회장"으로 변경
-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위원 변경(안 제11조제2항제3호)
 - -"농업정책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2, 28.(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기술보급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 1) 주 소 : 우 55640/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5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2) 전화번호(팩스): 063-350-2850(063-351-5392)
- 3) 전자우편(이메일) : hky0505@korea.kr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지도팀(063-350-285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나.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그네는 네항	찬성 반대		7	~U	H1-15-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장수사과영농조합대표, 한국사과협회장수군지회 장"을 "장수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대표, 한국사과생산자협회장수지회장"으로, "농업정책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생	제11조(구성 및 임기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②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원을 위촉	
임명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위원 : 장수군조합공동사업	3
법인대표, <u>장수사과영농조합</u>	<u>장수사과원예농업협동</u>
대표, 한국사과협회장수군지	조합대표, 한국사과생산자협
<u>회장</u> , 사과여성연구회장, 장	<u>회장수지회장</u>
수군 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u>농업정책</u>	<u>농산유통과장</u>
<u>과장</u> , 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	
수, 사과재배 선도농가 등 생	
산, 유통, 가공, 정책분야에	
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중	
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장수군 고시 제2023-5호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2월2일장 수 군 수

- 1. 사업의 목적 : 특용작물 재배(사과나무 및 오미자)
-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산103-4번지 일원

○ 면 적: 7,230 m²

- 3. 사 업 비: 금57,760,000원
- 4. 사업기간: 2018. 12. 05. ~ 2023. 01.
- 5. 사업의 효과: 농가소득 신규창출 및 증대
- 6. 사업시행자 : 정 상 두

장수군 고시 제2023-6호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2월2일장 수 군 수

- 1. 사업의 목적 : 특용작물 재배(사과나무 및 오미자)
-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1306-16번지 외 4필지 일원
 - o 면 적 : 20,125 m²
- 3. 사 업 비: 금10,210,000원
- 4. 사업기간: 2019. 03. ~ 2023. 01.
- 5. 사업의 효과: 농가소득 신규창출 및 증대
- 6. 사업시행자 : 정 상 두

장수군 고시 제 2023-8호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고시

「장수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제11조의2에 의하여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1696번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 「수도법」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장 수 군 수

1. 폐지대상시설

구	분	시설명	위	치	용량	설치년도	비고
소규모수	-도시설	을곡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1696	10	1979	

2. 폐지사유: 광역상수도공급으로 인한 미사용 및 농업용수로 변경

3. 폐지일자 : 2023. 02. 07.

4. 급수대책 : 광역상수도 공급

5. 문의처 : 장수군청 체육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063-350-2891)

장수군 고시 제2023-10호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의 고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6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장 수 군 수

옵면	도로의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7 .	(변경)
				구 분	기 점	종 점	(Km)	주 요 경과지	고시사유
장수군	당	초	136노선	1	-	_	303.70	_	_
총계	변	경	132노선	1	_	_	289.21	_	_
장수읍	당	초	32노선	I	-	_	77.60	_	_
총계	변	경	33노선	ı	_	_	78.66	_	_
소계	당	초	3노선	I	-	_	9.80	_	_
(면도)	변	경	3노선	-	-	-	5.81	-	-
장수읍	면도	년도 장용선	현 102	당초	장수리 540-2	용계리 1625	7.00	장수리	기종점부
				변경	장수리 685-1	용계리 745-6	4.39	경무덕	지번 및 연장 정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2.25>

	도로의종		_ 노 선		도로구간				(변경)	
읍면	년 교류 노선명 류 교	노선명	번 호	구 분	기 점	종 점	.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고시사유	
北人〇	면도	송계선	104	당초	수분리 968-2	수분리 산 2-4	1.30	人 目 刊	종점부	
장수읍	건도	중세신	104	변경	수분리 968-2	수분리 969	0.90	수분리	지번 및 연장 정정	
-1 k 0	1	2 F 1)	105	당초	두산리 530-15	두산리 1050	1.50	두산리	기·종점부 지번·노선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장수읍	면도	송두선	105	변경	두산리 545-1	두산리 366-4	0.52			
소계	당	초	13노선	_	-	_	32.50	_	_	
(리도)	변	경	15노선	_	-	-	34.18	-	_	
장수읍	리도) - -)	당초	두산리 451-2	두산리 72-12	3.00	장수리	기점부 지번 및		
·6 丁铂	니고	장두선	204	변경	장수리 696-3	두산리 72-12	1.60	374	연장 정정, 노선 분할	
장수읍	리도	하와선	206	당초	개정리 395-4	개정리 산 11	2.10	개정리	연장 정정	
				변경	개정리 395-4	개정리 산 11	1.80			
장수읍	· 리도 연당선	연당선 207	당초	덕산리 62	덕산리 371	3.80	덕산리	연장 정정		
				변경	덕산리 62	덕산리 371	3.16			

	도로의종		노 선		도로구긴	<u>}</u>	총연장		(변경)
읍면	류	노선명	보호	구 분	기 점	종 점	(Km)	주 요 경과지	고시사유
장수읍	리도	구암선	208	당초	대성리 1656-6	대성리 산 160-2	1.00	대성리	연장 정정
011	4±	1 63	200	변경	대성리 1656-6	대성리 산 160-2	1.33	41.64	4.0 .0.0
장수읍	리도	왕대선	209	당초	노하리 26-3	노하리 166-5	3.20	노하리	연장 정정
78十百	디도	청대신	209	변경	노하리 26-3	노하리 166-5	3.18	도아디	27 77
키스 Ó	-1 F	F 01 13	011	당초	개정리 1280-1	개정리 1168	2.00	레 과 귀	종점부 지번 및
장수읍	리도	농원선	211	변경	개정리 1280-1	개정리 1302	1.17	개정리	노선 선형 변경
カレン ウ	리도	7024	919	당초	송천리 산 154-38	송천리 1803-8	3.20	소리기	서기 기기
장수읍	디도	구용선	212	변경	송천리 산 154-38	송천리 1803-8	3.93	송천리	연장 정정
장수읍	리도	용계선	213	당초	용계리 산 110-15	용계리 417-2	2.70	용계리	연장 정정
- 6 丁苷	니エ	중세선	213	변경	용계리 산 110-15	용계리 417-2	3.70	<i>তিশা</i> প	ਪਿੱਲ ਨਿੱਲੋਂ
장수읍	리도	필덕선	214	당초	대성리 산 78-5	대성리 산 258-2	3.80	대성리	연장 정정
でする	니도	현작선	214	변경	대성리 산 78-5	대성리 산 258-2	4.65	네정터	ପଟ ଟିଟି

						1			
읍면	도로의종	노선명	노 선		도로구진	<u> </u>	총연장	주 요	(변경)
百七	류	主心で	번 호	구 분	기 점	종 점	(Km)	경과지	고시사유
장수읍	리도	수분선	215	당초	수분리 869-2	수분리 산 109	1.50	수분리	기점부 지번·노선 선형 변경
78 下铂	니エ	720	213	변경	수분리 1055	수분리 산 109	1.87	TEH	전 등 천경 및 연장 정정
장수읍	리도	대구선	216	당초	대성리 산 206-2	대성리 산 165-2	1.60	대성리	연장 정정
011	4.5	세기건	210	변경	대성리 산 206-2	대성리 산 165-2	1.85	4104	20 00
장수읍	리도	장구선	217	당초	송천리 1834-141	송천리 1834-102	2.10	- 송천리	기종점부 지번·노선 선형 변경
отн	912	016	211	변경	송천리 1834-142	송천리 694-5	2.61	8 1. 9	및 연장 정정
장수읍	리도	수상선	218	당초	수분리 산 63-8	개정리 53	2.50	_	노선 폐지
011	4.5	100	210	폐지	_	_	-		그 년 에 기
장수읍	리도	수동선	219	당초	_	_	-	· 동촌리	노선 신설
011	4.5	100	213	신설	동촌리 67-1	동촌리 산 12	0.88	0	C
장수읍	리도	원노하선	220	당초	_	-	-	노하리	노선 신설
оін	-1-	U9 U	240	신설	노하리 618	노하리 819	1.05		u u e
	-1-	.31.11	0.0-	당초	_	_	-	د در د.	. , , , , ,
장수읍	리도	대성선	221	신설	대성리 산 115-1	대성리 1447	-	대성리	노선 신설

	도로의종		노 선		도로구긴	<u>}</u>	총연장		(변경)
읍면	异	노선명	번호	구 분	기 점	종 점	(Km)	주 요 경과지	고시사유
소계	당	·초	16노선	_	_	-	35.30	-	_
(농도)	변	경	15노선	_	_	-	38.67	_	_
장수읍	사	두산선	301	당초	두산리 산 61-8	두산리 736	2.30	- 두산리	노선 선형 변경 및
	9.11	Tee	301	변경	두산리 산 61-8	두산리 736	3.43	T 전대	연장 정정
장수읍	농도	장노선	302	당초	장수리 701-21	노곡리 1916	3.00	· 장수리	종점부 지번 및
16 T H	0.7	822	302	변경	장수리 701-21	노곡리 1671	2.50	814	연장 정정
장수읍	농도	중리선	305	당초	노곡리 1452-3	노곡리 산 123-30	2.00	- 노곡리	종점부 지번 및
10 T H	0.7	8 년 년	303	변경	노곡리 1452-3	노곡리 907-8	1.49	 	연장 정정
장수읍	상 고	하리선	306	당초	노곡리 1424	노곡리 산 84-3	1.60	- 노곡리	종점부 지번·노선 선형 변경
8千亩	<u>0</u> ∓	아디진	300	변경	노곡리 1424	노곡리 산 79-2	1.65	, 포쿠터	신청 건경 및 연장 정정
자스으	누ㄷ	소워서	207	당초	송천리 999-3	송천리 산 2-1	1.60	소ᅯ긔	종점부
장수읍	농도	송천선	307	변경	송천리 999-3	송천리 산 2-1	2.55	* 송천리	지번 및 연장 정정
장수읍	농도	송용선	308	당초	송천리 1875	송천리 산 71	3.20	* 송천리	연장 정정
0 1 日	0	001	530	변경	송천리 1875	송천리 산 71	3.50	0 69	LU 0 0

	도로의종		노 선		도로구긴	<u> </u>	총연장		(변경)
읍면	류	노선명	번 호	구 분	기 점	종 점	(Km)	주 요 경과지	고시사유
장수읍	4.4	77124	200	당초	송천리 1838-5	송천리 2384	1.80	소리기	어지 가기
37日	농도	구진선	309	변경	송천리 1838-5	송천리 2384	1.86	* 송천리	연장 정정
장수읍	상 뇌	법연선	310	당초	덕산리 212	덕산리 산 54-1	3.00	· 덕산리	연장 정정
011	0.7-	нич	310	변경	덕산리 212	덕산리 산 54-1	3.70	724	4.0 .0.0
장수읍	농	용용선	311	당초	개정리 961-6	용계리 317-5	1.10	· 개정리	연장 정정
011	0 1	001	511	변경	개정리 961-6	용계리 317-5	1.00	711 6 41	20 00
장수읍	농도	수용선	313	당초	용계리 산 17-14	수분리 530-1	4.10	용계리	연장 정정
8十日	. T	T872	313	변경	용계리 산 17-14	수분리 530-1	3.72	5/11/1	U.S .S.S
장수읍	농도	식대선	314	당초	대성리 165-6	식천리 208-1	2.80	. 식천리	기종점부 지번 및
QIH	0 1-	그네건	214	변경	식천리 593-1	대성리 153-1	1.50] 기센 년	선장 정정
장수읍	농도	식천선	315	당초	식천리 262-6	식천리 산 162-2	1.40	. 식천리	연장 정정
3 1 11	3 —	,	- 10	변경	식천리 262-6	식천리 산 162-2	2.20	, 2 1	

	도로의종		노 선		도로구긴	<u>}</u>	총연장	주 요	(변경)
읍면	류	노선명	번 호	구 분	기 점	종 점	(Km)	경과지	고시사유
カレン ウ	농도	מן דון. גון	210	당초	산서면 오성리 산 99-1	식천리 산 174	3.00	산서면	연장 정정
장수읍	8.2	비말선	316	변경	산서면 오성리 산 99-1	식천리 산 174	6.32	오성리	변경 경정 -
기스 Ó	4 F	\$1.11.1J	017	당초	식천리 산 177-11	식천리 66-1	2.00	x1 ≈1 ¬1	A) 7) 7) 7)
장수읍	농도	치식선	317	변경	식천리 산 177-11	식천리 66-1	2.00	식천리	연장 정정
장수읍	농도	단평선	318	당초	송천리 1804-11	용계리 산 110-17	1.20	_	노선 폐지
0119	0.1	202	310	폐지	_	_	-		
장수읍	농도	노하선	319	당초	노하리 296-1	송천리 1031-1	1.20	노하리	종점부 지번 및
8 I H	0.77	그이건	319	변경	노하리 296-1	송천리 1042	1.25	조이디	연장 정정
산서면	당	초	21노선	_	_	_	48.10	_	_
총계	변	경	20노선	-	_	_	45.90	_	_
산서면	당	초	2노선	_	_	_	7.40	_	_
소계 (면도)	변	경	2노선	-	_	_	8.00	_	_
산서면	면도	동백선	102	당초	동화리 207-7	백운리 산 27-9	3.60	동화리	연장 정정
ene.	7.1.	070	102	변경	동화리 207-7	백운리 산 27-9	3.95	0 4 4	LO 00

					F 7 7 7	1			
읍면	도로의	노선명	노선		도로구긴	<u>-</u>	총연장	주요	(변경)
нч	종류		번호	구분	기점	종점	(Km)	경과지	고시사유
산서면	14 F	성왕선	102	당초	마하리 산 52-1	사계리 323-1	3.80	마하리	어기 가기
선시인	면도	(경영건 	103	변경	마하리 산 52-1	사계리 323-1	4.05	Profi	연장 정정
소계	당	초	9노선	_	_	1	21.90	_	_
(리도)	변	경	8노선	_	_	-	19.08	_	_
산서면	리도	사계선	202	당초	사계리 59-1	사계리 1102	1.60	사계리	종점부 지번 및
산시원	디도	· 샤세선	202	변경	사계리 59-1	사계리 산 6-3	1.22	1 사세 터	선장 정정
21 21 ml	-1 F	E al al	905	당초	마하리 산 76-1	백운리 819-6	5.50	마하리	사기 기기
산서면	리도	도상선	205	변경	마하리 산 76-1	백운리 819-6	5.03	바야터	연장 정정
21 21 ml	-1 F	EJU	200	당초	동화리 839-158	동화리 775	1.30	도위기	종점부 지번·노선
산서면	리도	동곡선	206	변경	동화리 839-158	동화리 775-2	1.86	동화리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kl kl m	-1 F	E 11 14	207	당초	동화리 839-207	하월리 산 27	2.30	도원기	어기 가기
산서면	리도	동신선	207	변경	동화리 839-207	하월리 산 27	2.73	동화리	연장 정정
산서면	리도	봉서선	208	당초	봉서리 356-5	봉서리 1173	1.60	봉서리	연장 정정
· 판시턴	디 디도	· 중시선	200	변경	봉서리 356-5	봉서리 1173	2.00	중시터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ı				T		
	도로의		노선		도로구긴	<u>}</u>	· 총연장	주요	(변경)
읍면	종류	노선명	번호	구분	기점	종점	(Km)	경과지	고시사유
산서면	리도	오산선	210	당초	오산리 1163	오산리 산 60	1.40	오산리	종점부 지번·노선 선형 변경
전시된	Ч±	£ 70 70	210	변경	오산리 1163	오산리 849-4	1.05	1111	전 등 천경 및 연장 정정
산서면	리도	신오선	211	당초	신창리 280-1	오산리 454-2	2.50	· 신창리	노선 선형 변경 및
ਦਾਸਦ	71	U.J. U	211	변경	신창리 280-1	오산리 454-2	2.69	204	연장 정정
산서면	리도	사방선	212	당초	사계리 754	봉서리 168-1	3.10	_	노선 폐지
e je	0132	100	212	폐지	-	_	_		
산서면	리도	반방선	213	당초	사계리 41-4	오성리 1192	2.60	사계리	기점부 지번·노선 선형 변경
ਹ/ਪਹ	니그	ਦ ਨਾਦ	213	변경	사계리 1031	오성리 1192	2.50	7/7/4	및 연장 정정
소계	당	초	10노선	_	_	_	18.80	_	_
(농도)	변	.경	10노선	_	_	_	18.82	_	_
시네데	ኍ Ľ	9 21 24	202	당초	동화리 1104	학선리 170-1	1.90	· 동화리	여자 정정
산서면	농도	용산선	302	변경	동화리 1104	학선리 170-1	1.69	· 중확대	연장 정정
산서면	농도	용동선	303	당초	학선리 948	학선리 산 43	1.10	_	노선 폐지
· 현시현	-0 T	চকথ	3U3	폐지	_	_	_		그건 베시

	도로의		노선		도로구진	<u>}</u>	총연장	주요	(변경)
읍면	종류	노선명	번호	구분	기점	종점	(Km)	경과지	고시사유
산서면	농도	신월선	304	당초	건지리 산 3-7	건지리 산 9	1.20	· 건지리	노선 선형 변경 및
2 7 4	0 11	cec	004	변경	건지리 산 3-7	건지리 산 9	1.03	-E. [9]	연장 정정
산서면	농도	양봉선	305	당초	이룡리 555	이룡리 706	1.50	- 이룡리	연장 정정
전시 현	9.7	0.0.4	303	변경	이룡리 555	이룡리 706	1.20	1 984	178 7878
산서면	4 P	2 61 23	200	당초	신창리 378-2	오산리 845	1.40	기취기	M 71 71 71
산서번	농도	소암선	306	변경	신창리 378-2	오산리 845	1.52	신창리	연장 정정
2] 2] pd	4- P	미위기	207	당초	오성리 394-4	오성리 산 106-1	1.60	\ \ \ \ \ \ \ \ \ \ \ \ \ \ \ \ \ \ \	노선 선형
산서면	농도	방화선	307	변경	오성리 394-4	오성리 산 106-1	1.55	오성리	변경 및 연장 정정
2] 2] ml	4 P	ני ני וי	200	당초	사상리 1078	봉서리 산 38-3	2.10	2) 2) -)	노선 선형
산서면	농도	사성선	308	변경	사상리 1078	봉서리 산 38-3	2.67	사상리	변경 및 연장 정정
ادر (د 1 داد	Ъ Г	LJ 2J 2J	200	당초	사상리 871	봉서리 산 73-3	3.20	ון גן	종점부 지번·노선
산서면	농도	당잣선	309	변경	사상리 871	봉서리 산 73-33	3.16	사상리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도로의		노선		도로구긴	<u>}</u>	총연장	주요	(변경)
읍면	종류	노선명	번호	구분	기점	종점	(Km)	경과지	고시사유
산서면	농도	반개선	310	당초	사계리 산 12	오성리 1434	3.30	사계리	연장 정정
전시 현	9 T	현기(현	310	변경	사계리 산 12	오성리 1434	2.52	자세되	178 7878
산서면	농도	용초선	311	당초	학선리 954	오산리 410-1	1.50	· 학선리	연장 정정
ਹੁੰਸ਼ਹ	0.7	8 22 10	311	변경	학선리 954	오산리 410-1	2.78	4.04	4.0 .0.0
산서면	농도	하봉선	312	당초	l	_	_	하월리	노선 신설
ਹਾਮਦ	0.77	, जिल्ल	312	신설	하월리 623	봉서리 822	0.70	이 된다	그건 건글
번암면	당	초	22노선	_	-	_	47.50	_	_
총계	변	경	21노선	_	ı	_	48.38	_	_
소계	당	·초	1노선	_	-	_	1.80	_	_
(면도)	변	경	_	_	-	_	_	_	_
번암면	면도	사암선	105	당초	사암리 산 64	사암리 산 78-3	1.80		노선 폐지
친금인	인도	사람선	103	폐지	_	_	_		고선 베스

	E Z Al Z		, , ,		도로구긴	<u>ŀ</u>	えんわ		(H H)
읍면	도로의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구 분	기 점	종 점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소계	당	·초	4노선	_	_	-	12.50	-	_
(리도)	변	경	5노선	_	_	-	17.93	-	_
번암면	리도	201	수상선	당초	장수읍 수분리 990-1	교동리 산 36	1.30	장수읍	노선 선형 변경 및
인급턴	디도	201	구경진	변경	장수읍 수분리 990-1	교동리 산 36	1.94	수분리	연장 정정
번암면	리도	202	대론선	당초	대론리 239-14	논곡리 산 18	0.50	대론리	기정 노선 유지 및
민급한	디도	202	내는건	변경	대론리 239-14	논곡리 산 18	1.66	네근디	연장 정정
번암면	리도	204	국노선	당초	국포리 99-12	노단리 1032-4	5.70	• 국포리	기정 노선 유지 및
인급인	디도	204	녹조선	변경	국포리 99-12	노단리 1032-4	5.00	1 수포터	연장 정정
비아내	-J F-	205	2-11	당초	죽림리 170-2	동화리 1382	5.00	ı rləl	기점부 지번·노선
번암면	리도	205	국하선 -	변경	노단리 1083-1	동화리 1382	6.83	노단리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비시다	-1 F	200	2] = 4 2 1	위계 조정	-	-	-	.	노선 위계조정 (농도-리도)
번암면	리도	206	신평선	변경	논곡리 1120-1	신평리 304	2.50	논곡리	농도 314호선 편입

	ı	ı		ı				I	ı
	도로의종		노 선		도로구긴	<u>}</u>	총연장	Z A	(변경)
읍면	류	노선명	번 호	구 분	기 점	종 점	(Km)	주 요 경과지	고시사유
소계	당	·초	17노선	_	_	_	33.20	_	_
(농도)	 변	경	16노선	_	-	-	30.45	_	-
번암면	농도	원대론선	301	당초	대론리 1143-64	대론리 산 3	3.00	· 대론리	연장 정정
· 한참선	<u>9</u> 王	전대근신	301	변경	대론리 1143-64	대론리 산 3	3.05	네란디	27 78 78
비아내	Ъ Г	수척선	202	당초	대론리 1143-10	대론리 산 22	1.60	· 대론리	어지 자기
번암면	농도	· 구식신	302	변경	대론리 1143-10	대론리 산 22	1.95	1 내존되	연장 정정
				당초	동화리 1382	동화리 54	3.20		노선 선형
번암면	농도	상갈선	303	변경	동화리 1382	번암면 동화리 54	3.50	동화리	변경 및 연장 정정
번암면	농도	하속선	304	당초	동화리 934-4	동화리 산 4	2.80	동화리	기정 노선 유지 및
				변경	동화리 934-4	동화리 산 4	2.85		연장 정정
번암면	농도	지지선	305	당초	지지리 1165	지지리 1113	1.90	지지리	연장 정정
				변경	지지리 1165	지지리 1113	2.25	,	

				1					
	도로의종		노 선		도로구긴	<u>}</u>	총연장	Z 4	(변경)
읍면	류	노선명	번 호	구 분	기 점	종 점	(Km)	주 요 경과지	고시사유
번암면	농도	삼거선	306	당초	지지리 133-2	지지리 산 15	0.50	· 지지리	연장 정정
200	0.75	ਰ/Pd	300	변경	지지리 133-2	지지리 산 15	0.85	7774	4.8 .8.8
번암면	농도	원사암선	308	당초	사암리 321-3	사암리 산 113-6	1.10	사악리	종점부 지번·노선 선형 변경
260	0.75	2/16/2	300	변경	사암리 321-3	사암리 41	0.70	71 6 7	민 연장 정정
번암면	농도	상임선	309	당초	사암리 1090-4	사암리 948-1	1.50	사암리	연장 정정
· 인급인	0.77	0 표권	309	변경	사암리 1090-4	사암리 948-1	1.35	가급니	128 88
비아내	Ъ Г	O H) 44	210	당초	사암리 산 177-9	사암리 993	1.70	1) ()L-1)	종점부
번암면	농도	오범선	310	변경	사암리 산 177-9	사암리 1034	0.90	사암리	지번 및 연장 정정
번암면	농도	하북선	311	당초	국포리 99-8	사암리 산 178	1.40	. 국포리	종점부 지번 및
upu	0 -1-	976	511	변경	국포리 99-8	국포리 산 3	1.30	-11-11	연장 정정
번암면	농도	대방선	312	당초	죽산리 627-4	죽산리 산 90-1	1.50	. 죽산리	노선 선형 변경 및
	0 22	1100	012	변경	죽산리 627-4	죽산리 산 93	1.45	162	연장 정정

	E 7 A) Z		노 선 번 호		도로구긴	<u>-</u>	₹ A] 7]		(ul -ul)
읍면 류	도로의종 류	노선명		구 분	기 점	종 점	·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번암면	농도	샛터선	313	당초	노단리 1216-2	노단리 산 37-6	1.90	- 노단리	노선 선형 변경 및
000	면압면 중도 셋터	옷대신	313	변경	노단리 1216-2	노단리 산 37-6	2.45	그런더	연장 정정
번암면	농도	-도 신평선	314	당초	논곡리 1120-1	신평로 304	2.30	_	위계조정 (농도 ·리도) 리도
000	0.7-	14.50.4	314	위계 조정	_	-	_		206호선으 로 편입
번암면	농도	구신선	구신선 315	당초	유정리 1086	유정리 산 87	2.50	유정리	연장 정정
전급단	. T			변경	유정리 1086	유정리 산 87	2.50	1784	
번암면	상 뇌	상하선	316	당초	교동리 산 23	교동리 산 53	2.60		종점부 지번 및 연장 정정
인급선	<u>0</u> E	경약선		변경	교동리 산 23	교동리 산 48-2	2.25	교동리	
번암면	농도	도치.서	210	당초	동화리 1382	동화리 산 160	1.70	도칭긔	여자 저저
- 변합편 <u>- 중</u> 도	-0 -J-	농도 동화선	318	변경	동화리 1382	동화리 산 160	1.50	- 동화리	연장 정정
번암면	농도	도 논곡선	318	당초	논곡리 산 169-2	논곡리 산 189	2.00	. 논곡리	노선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0 —	- 7 - 1	010	변경	논곡리 산 169-2	논곡리 산 189	1.60	_ 논곡리	

	도로의종		노 선		도로구긴	<u> </u>	· 총연장		(변경)
읍면	류	노선명	번호	구 분	기 점	종 점	(Km)	주 요 경과지	고시사유
장계면	당	초	14노선	-	-	-	25.20	-	-
총계	변	경	13노선	_	ı	_	24.69	_	_
소계	당초		1노선	_	_	_	1.00	_	_
(면도)	변경		1노선	_	_	-	1.00	-	-
장계면		수오선	103	당초	삼봉리 28-14	오동리 723-6	1.00	삼봉리	
경계인	면도	十五位	103	변경	삼봉리 28-14	오동리 723-6	1.00	1 10 4	_
소계	당	초	9노선	_	_	_	17.20	_	_
(리도)	변	경	9노선	_	_	_	16.61	_	_
장계면	리도	풍저선	204	당초	월강리 473-2	월강리 80-3	1.20	월강리	노선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8/11년	44	6 시원 -		변경	월강리 473-2	월강리 80-3	1.30	₽ 6 H	
장계면	-1-	남산선	205	당초	삼봉리 1159	삼봉리 724-1	1.10	삼봉리	연장 정정
3세단	리도	급건건		변경	삼봉리 1159	삼봉리 724-1	0.80		
장계면	리도	도장선	206	당초	월강리 526-12	월강리 89-2	1.80	월강리	연장 정정
경계인	41	T.9.5	200	변경	월강리 526-12	월강리 124-16	2.00	[변경 년	10 66
꼬! -레 마	a) 	ㅁ누ㅂ	207	당초	금덕리 662-4	금덕리 산 1-1	2.00	그러카	여자 가기
장계면	리도	무농선	207	변경	금덕리 662-4	금덕리 산 1-1	2.55	금덕리	연장 정정
기 레마	-J T-	동서선	200	당초	송천리 810	금덕리 850	1.60	2 -1 -2	연장 정정
장계면	리도		208	변경	송천리 810	금덕리 850	1.30	송천리	

	도로의종		노 선 번 호		도로구긴	<u> </u>	총연장		(변경)
읍면	류	노선명		구 분	기 점	종 점	(Km)	주 요 경과지	고시사유
	귀 다	신동선	209	당초	송천리 251-2	월강리 산 25-3	1.60	송천리	연장 정정
167N U	장계면 리도 신동	ਪਰ ਪ	209	변경	송천리 251-2	월강리 산 25-3	2.31	· 6 센터	
장계면	리도		컥선 210	당초	장계면 명덕리 1365-6	장계면 명덕리 산 121	1.90	- 명덕리	종점부 지번 및 연장 정정
· 경계된	HT.	· 중약선		변경	명덕리 1365-6	명덕리 1723-8	0.90		
장계면	리토	탑동선	211	당초	삼봉리 302-1	명덕리 산 10-8	1.00	사보리	노선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 경계된	HT.			변경	삼봉리 302-1	명덕리 산 10-8	1.90	- 삼봉리	
Ζ λ - 게 τ넘	리도	오지선	213	당초	오동리 723-6	대곡리 502-6	5.00	- 오동리	연장 정정
장계면				변경	오동리 723-6	대곡리 502-6	3.55		

			ı					T	T
	도로의종		노 선		도로구긴	<u>}</u>	총연장	7 .	(변경)
읍면	류 류	노선명	번 호	구 분	기 점	종 점	(Km)	주 요 경과지	고시사유
소계	당	초	4노선	-	-	_	7.00	_	_
(농도)	변경		3노선	-	-	_	7.08	_	-
그나 그리 다	농도	최고니	201	당초	오동리 888-4	오동리 1070	1.40	스토리	연장 정정
장계면	- 6 E	회곡선	301	변경	오동리 888-4	오동리 1070	2.00	오동리	
장계면	노드	농도 평면선	304	당초	명덕리 947-1	명덕리 산 154-1	1.00	- 명덕리	연장 정정
3세인	<u>8</u> T		304	변경	명덕리 947-1	명덕리 산 154-1	2.90		
	, _			당초	명덕리 1030-17	명덕리 산 21	3.00		종점부 지번·노선
장계면	농도	원명선	305	변경	명덕리 1030-17	명덕리 628-1	2.18	명덕리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장계면	농도	위동선	307	당초	금덕리 316-6	무농리 66	1.60	_	노선 폐지
				폐지	-	_	_		
천천면	당	초	17노선	_	_	-	40.80	-	-
총계	변	경	15노선	_	_	-	34.58	_	-
소계	당	초	4노선	_	-	-	7.70	-	-
(면도)	변경		5노선	_	-	_	11.42	_	_
천천면	며두	면도 구신선	101	당초	연평리 379-1	오봉리 648-1	2.30	- 연평리	연장 정정
	면도			변경	연평리 379-1	오봉리 648-1	2.32	1.04	

				1					1
\$ -V	도로의	, 23 22	노선		도로구긴	<u>}</u>	총연장	주요	(변경)
읍면	종류	노선명	번호	구분	기점	종점	(Km)	경과지	고시사유
천천면	면도	옥자선	105	당초	오봉리 244	오봉리 산 102	1.00	오봉리	연장 정정
	<u> </u>	1716	100	변경	오봉리 244	오봉리 산 102	0.94	204	고생 성생
천천면	면 면도 장척선	자천서	108	당초	장판리 361	장판리 산 137	2.60	- 장판리	종점부 지번 및 연장 정정
યવં	U.L.	872	100	변경	장판리 361	장판리 산 136-4	3.02	814	
천천면	며ㄷ	면도 오봉선	오봉선 109	당초	오봉리 329-1	금곡리 산 12-4	1.80	· 오봉리	노선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યવા	<u>U.L.</u>			변경	오봉리 329-1	금곡리 산 12-4	2.09		
천천면	면도	도 춘용선	춘용선 110	당초	-	_	_	- 춘송리	노선 신설
યવં	<u>U.L.</u>			신설	춘송리 943-11	용광리 603-1	3.05		
소계	당	초	5노선	_	_	_	13.40	_	_
(리도)	변	경	4노선	_	_	_	10.37	_	_
천천면	ગ્ર⊏	_	202	당초	비룡리 561	비룡리 산 84-2	2.00	_	노선 폐지
선선번	리도	_	202	폐지	-	_	_	_	고선 베시
천천면	리도	삼정선	205	당초	삼고리 237	삼고리 923	2.40	λl → ¬¹	연장 정정
선선인				변경	삼고리 237	삼고리 923	2.66	삼고리	

	도로의		노선 번호		도로구긴	<u>}</u>	총연장	주요	(변경)
읍면	종류	노선명		구분	기점	종점	(Km)	경과지	고시사유
천천면 리도	신검선	206	당초	춘송리 1416-34	봉덕리 796	3.10	· 춘송리	연장 정정	
યયા	200 912 0	(LA)	200	변경	춘송리 1416-34	봉덕리 796	2.67	204	2000
처처며	천천면 리도 춘송선	추소 서	207	당초	춘송리 1446-47	춘송리 산 125	3.30	· 춘송리	연장 정정
યયા		당선 207	변경	춘송리 1446-47	춘송리 산 125	3.07	한당다	LO 00	
천천면	리도	E 돈촌선	돈촌선 208	당초	남양리 1333	남양리 산 52-1	2.60	남양리	연장 정정
યયા	42		200	변경	남양리 1333	남양리 산 52-1	1.97	Б 6 4	
소계	당	초	8노선	_	_	_	19.70	_	_
(농도)	변	경	6노선	_	_	_	12.79	_	_
천천면	농도	송운선	302	당초	봉덕리 642	장판리 산 132-1	6.80	· 봉덕리	종점부 지번 및 연장 정정
222	0 T	044	302	변경	봉덕리 642	장판리 산 55-3	5.34	0 7 9	
천천면	노ㄷ	_	306	당초	남양리 787	남양리 812-2	2.00	_	나서 레기
선선진	농도	_	306	페지	_	_	_	_	노선 폐지
청천며	노ㄷ	=d −l 21	리선 307 -	당초	연평리 365	오봉리 1318	1.50	- 연평리	노선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천천면 농	농도 평리선	1 70 년간		변경	연평리 365	오봉리 1318	1.53	_ 년정 년	

					도로구긴	<u> </u>			
읍면	도로의	노선명	노선			<u>.</u>	총연장	주요	(변경)
HU	종류	1100	번호	구분	기점	종점	(Km)	경과지	고시사유
천천면 농도	4-1-	0.01.11	200	당초	용광리 329-1	용광리 산 68-1	1.60	0 31-31	종점부 지번·노선
선선언	· 중도	용암선	309	변경	용광리 329-1	용광리 939-1	0.78	용광리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천천면	농도	송명선	310	당초	춘송리 1446-74	춘송리 20-2	2.00	· 춘송리	연장 정정
	0.0.0	0 0 6	010	변경	춘송리 1446-74	춘송리 20-2	2.13	20-1	2000
천천면	농도	내기선	210	당초	남양리 949	남양리 산 75	1.70	남양리	연장 정정
신신인	선선면 공도	내기선	312	변경	남양리 949	남양리 산 75	1.91	1 현장되	278 7878
മിമിനി	농도	농도 -	313	당초	월곡리 655	월곡리 산1	2.10		노선 폐지
천천면				폐지	_	-	-	_	모선 페시
2) 2) m	L P	도 판둔선	317	당초	천천면 장판리 324-1	장수읍 노하리 953-1	2.00	기네기	기점부 지번 및
천천면	농도			변경	천천면 장판리 산95-2	장수읍 노하리 953-1	1.10	장판리	연장 정정
계남면	당	·초	15노선	_	-	-	33.20	_	_
총계	- 변	.경	15노선	_	_	_	26.36	_	_
소계	당	·초	1노선	_	-	-	4.50	-	-
(면도)	변경		1노선	_	-	-	4.46	_	-
계남면	명두	도 고양선	101	당초	신전리 1096-11	호덕리 632-6	4.50	· 신전리	연장 정정
게 답 단	면도			변경	신전리 1096-11	호덕리 632-6	4.46	· 한번	L 0 1018

	도로의		노선		도로구긴	<u>}</u>	총연장	주요	(변경)	
읍면	종류	노선명	번호	구분	기점	종점	(Km)	경과지	고시사유	
소계	당	·초	8노선	_	_	_	16.90	-	-	
(리도)	변경		8노선	_	-	-	15.26	-	-	
계남면	리도	사곡선	205	당초	장계면 장계리 363-9	침곡리 1094	1.90	침곡리	기종점부 지번 및 연장 정정	
	세당인 디도	, , ,		변경	침곡리 1438-101	침곡리 산 65	1.71			
게나며	계남면 리도 갈평	가면 서	206	당초	호덕리 633-1	호덕리 산 12-1	1.10	- 호덕리	연장 정정	
게담인		설명선	206	변경	호덕리 633-1	호덕리 산 12-1	0.98	244		
-11 1 h-12-4	리도	E 한중선	귀조기 007	207	당초	화음리 994-2	신전리 1455-46	1.50	화음리	연장 정정
계남면	디도		207	변경	화음리 994-2	신전리 1455-46	3.39	769	20 000	
게나며	⊐ì ⊏	곡리선	208	당초	가곡리 산 47	궁양리 518-6	3.40	703	기종점부 지번 및 연장 정정	
계남면	리도	극디신	208	변경	궁양리 518-6	신전리 583	2.35	궁양리		
계남면	리도	원지선	200	당초	장안리 606-8	장안리 산 116-3	3.10	장안리	종점부 지번·노선 선형 변경	
게담면	디 디도	전시선	209	변경	장안리 606-8	장안리 990-1	2.44	경진터	신영 변경 및 연장 정정	
계남면	ગ⊏	700	010	당초	호덕리 882	호덕리 산 35	2.00		종점부 지번·노선	
게담면	리도 구원선	210	변경	호덕리 882	호덕리 124-1	0.97	호덕리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도로의		노선 번호		도로구긴	<u> </u>	· 총연장	주요	(변경)
읍면	종류	노선명		구분	기점	종점	(Km)	경과지	고시사유
계남면 리도	귀두	침령선	211	당초	침곡리 1912	침곡리 1781-1	1.60	_	노선 폐지 (군도
	нос	211	폐지	_	-	_		(군노 편입)	
게나며	계남면 리도 요명선	O 면 서	212	당초	침곡리 887-2	화양리 905-4	2.30	참곡리	연장 정정
세금단		표정신	212	변경	침곡리 887-2	화양리 905-4	2.03	심득다	
ગીમી જે	-J F	리도 희평선	희평선 213	당초	_	-	_	7] 6] 7]	노선 신설
계남면	디도			신설	장안리 639-1	장안리 47	1.39	장안리	도선 선설
소계	당	초	6노선	_	_	_	11.80	_	_
(농도)	변	경	6노선	_	-	-	6.64	_	_
계남면	농도	양신선	303	당초	신전리 1445-6	신전리 1083-3	1.50	- 신전리	연장 정정
세급단	9 T			변경	신전리 1445-6	신전리 1083-3	1.66	건센터	
계남면	농도	하사서	305	당초	화음리 산 100-2	화음리 산 58	1.50	화음리	종점부 지버 및
/11 E E	수도	화산선	000	변경	화음리 산 100-2	화음리 산 57	1.31	784	지번 및 연장 정정
계나며	누ㄷ	-	306	당초	궁양리 125-1	궁양리 1122	2.70	_	노선 폐지
계남면	농도			폐지	_	_	_		

	도로의		노선 번호		도로구긴	<u>}</u>	총연장	주요	(변경) 고시사유			
읍면	종류	노선명		구분	기점	종점	(Km)	경과지				
ત્રી દિવસ	농도	크 모 A	200	당초	장안리 280	장안리 산 116-1	3.30	zholal	종점부			
계남면	9-E	괴목선	308	변경	장안리 280	장안리 432	0.55	장안리	지번 및 연장 정정			
ત્રી દિવસ	ъ. г.	키운 시	200	당초	-	_	_	ə) 77 -1	노선 신설			
계남면	농도	침호선	309	신설	침곡리 959-22	호덕리 1169	0.73	침곡리				
ત્રી] ો.ઝને	4-1-	수열선	المحمد	ال الم	וו נא ג	0.7.7	당초	화음리 1553	화음리 산 12-1	1.30	~1 A ~1	연장 정정
계남면	농도		311	변경	화음리 1553	화음리 산 12-1	1.17	화음리	20 000			
الراب	농도	음신선	-신선 314	당초	신전리 801-35	신전리 산 44-3	1.50	2] -1 -1	여자 저지			
계남면				변경	신전리 801-35	신전리 산 44-3	1.22	- 신전리	연장 정정			
	당	·초	15노선	_	-	_	31.30	_	_			
총계	변	경	15노선	_	-	_	30.64	_	_			
소계	당초 소계		2노선	_	-	_	9.10	_	_			
(면도)	변	경	2노선	_	_	_	9.15	_	_			
ᆌᄇᆏ	면도	면도 외월선		당초	원촌리 2110	월현리 452-1	5.50	이호기	어가 가가			
계북면			외월선 103	변경	원촌리 2110	월현리 452-1	5.11	원혼리	연장 정정			

<u> </u>	도로의 옵면 종류		노선		도로구긴	<u>}</u>	총연장	주요	(변경)								
읍면 		노선명	번호	구분	기점	종점	(Km)	경과지	고시사유								
계북면	면도	백연선	104	당초	농소리 213-2	임평리 1024-3	3.60	- 농소리	연장 정정								
게곡단	7.2	900	104	변경	농소리 213-2	임평리 1024-3	4.04	924	11.8 .8.8								
소계	당	초	4노선	_	_	_	7.20	_	_								
(리도)	변	경	5노선	_	-	_	8.78	_	_								
계북면	리도	매압선	매압선	201	당초	매계리 567	매계리 산 69-1	1.20	매계리	연장 정정							
계독인	니도			매답인	배급권	배급권	배급권	베 급건	배급권	메타인	201	변경	매계리 567	매계리 산 69-1	1.52	. 11711 21	20 00
계북면	리도	도 어문선 2	203	당초	어전리 737-8	농소리 산 33-1	2.50	· 어전리	종점부 지번·노선 선형 변경								
계곡단	니도			변경	어전리 737-8	농소리 산 33-13	2.33	기전다	전 8 년 70 및 연장 정정								
계북면	리도	원마선	원마선	원마선	원마선	원마선	임교과	일교교	일교사	임마서	204	당초	양악리 780	양악리 573	1.30	양악리	종점부 지번·노선 선형 변경
계독인	4 <u>+</u>						204	변경	양악리 780	양악리 1266	1.73	7 7 7 7	신청 건성 및 연장 정정				
계북면	a) =:	고 건	205	당초	원촌리 1982	원촌리 산 128	2.20	이호기	여자 저기								
세 <u>국</u> 변	리도	파곡선	선 205	변경	원촌리 1982	원촌리 산 128	2.32	원촌리	연장 정정								
계보대	리도	리도 어전선	어전선 206	당초	-	-	-	어전리	노선 신설								
계북면				신설	어전리 48-2	어전리 23	0.88	기선터	조선 선설								

		I					I		I					
<u> </u>	도로의		노선	도로구간				주요	(변경)					
읍면	종류	노선명	번호	구분	기점	종점	. 총연장 (Km)	경과지	고시사유					
소계	당	·초	9노선	_	_	_	15.00	-	-					
(농도)	변	경	8노선	-	_	_	12.71	-	-					
계북면	농도	원양선	301	당초	양악리 975	양악리 산 29-9	1.80	_	노선 폐지					
계탁단	0.1	201	301	폐지	-	_	_		도선 폐시					
케보다	계북면 농도	내림선		202	당초	임평리 466-16	임평리 산 2-1	1.70	임평리	종점부 지번 및				
세국턴			림선 303	변경	임평리 466-16	임평리 627-1	1.42	김정디	연장 정정					
케보다	4. F-	농신선	اد (د اد عا	노시시	노시러	노시서	305	당초	농소리 708-3	농소리 산 69	1.50	- 농소리	종점부 지번·노선	
계북면	농도		· 선선 303	변경	농소리 708-3	농소리 산 61-2	1.27	중소리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계북면	<u></u>	외림선	외림선	외림선	외림선	외림선	이라고	206	당초	원촌리 산 68-1	원촌리 1454-2	1.60	이초리	여자 정정
세국턴	농도						306	변경	원촌리 산 68-1	원촌리 1454-2	1.57	원촌리	연장 정정	
ᆌᄇᆏ	ът-	भी ची स्व	207	당초	임평리 94-1	임평리 543	1.10		어지 가기					
계북면	농도	내매선	307	변경	임평리 94-1	임평리 543	1.10	임평리	연장 정정					
ᆌᄇᆏ	농도	농도 솔파선	솔파선 308	당초	원촌리 519-2	원촌리 123	1.50	のラー	종점부 지번·노선					
계북면				변경	원촌리 519-2	양악리 180	1.60	원촌리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도로의		노선		도로구긴	<u>}</u>	총연장	주요	(변경)
읍면 종류	노선명	번호	구분	기점	종점	(Km)	경과지	고시사유	
계북면	농도	어전선	309	당초	어전리 540	어전리 산 9-5	3.10	· 어전리	기점부 지번·노선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게 작 단	제국년 · 중도 역	이센션	309	변경	어전리 산 78-7	어전리 산 9-6	2.88		
게보며	계북면 농도 산촌선	u ÷ u	존선 310	당초	월현리 585-4	월현리 219	1.60	· 월현리	연장 정정
게 작 단		1 111		신설	월현리 585-4	월현리 219	1.50	[원인니	178 878
계북면 농도			당초	월현리 473-5	월현리 636-5	1.10	· 월현리	기종점부 지번·노선	
	<u>9</u> E	. 대곡선	곡선 311	변경	월현리 474-2	월현리 639-1	1.37] 필언디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장수군 체육맑은물사업소 공고 제 2023-5호

토지 및 물건 조사, 측량 등을 위한 토지 출입공고 (동화댐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동화댐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북지방환경청고시 제2022-31호, 2023. 1. 3.)에 따라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02월03일장수군수

1. 사 업 명 : 동화댐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3. 출입기간 : 2023. 02. 10. ~ 2025. 12. 31.

4. 출입일시 : 09:00 ~ 18:00

5. 출입대상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m²)	2 Ó →ì	ען די	
컨텐	읍•면	리	지번	기숙	공부상	편입	소 유 자	비고
1	번암면	노단리	1221-1	답	305	3.3	대한예수교장로회****	
2	번암면	노단리	352-1	답	760	90.3	윤*숙	
3	번암면	노단리	347-1	전	577	107.5	오*규	
4	번암면	논곡리	418	잡	208	11.1	박*임	
5	번암면	대론리	1358-6	도	246.3	1.9	한국도로공사	
6	번암면	대론리	988-2	대	8	3.6	임*택	
7	번암면	대론리	1358-7	도	96.9	19.3	한국도로공사	
8	번암면	대론리	1262-1	도	482.4	44.3	한국도로공사	
9	번암면	대론리	1360-1	도	211	45.8	한국도로공사	
10	번암면	대론리	1237	답	2,230.1	60	신*동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군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장수군천 체육맑은물사업소

7. 기타 문의사항: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 경영팀 (063-350-0210, 0211)

장수군 예규 제606호

장수군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 지침

장수군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2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2.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장수군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상품권 구매) ①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한다.
 -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1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별, 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조사 등에 따른 경우
 - 2.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 우선 구매의 경우
 -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수사랑 상품권을 우선 구매하는 경우
 - ③ 상품권 관리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 하여야 한다
 - 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 2. 여러 부서가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 제5조(상품권 사용)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장수군 포상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 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 4.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그 유가족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
- 5. 그 밖에 장수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상품권 사용제한)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하여 사용할 수 없다.
 - 1. 명절 등에 감독기관, 상급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 2. 사업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 상급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 권을 지급하는 경우
 -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 제7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배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관리대장에는 구매일자·상품권종류·구매목적·구매처·예산과 목·구매수량, 배부일자·배부처·지급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 재하여야 한다.
 - 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

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 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증명자료)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 또는 배부한 경우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증명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한 사람이 자필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 ③ 상품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 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 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 3. 그 밖에 관련 증명서류
- 제9조(관리감독)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수 시로 점검하여 위법 ·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감사부서의 장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 1.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 절감을 위한 검토 절차 이행 여부

- 3. 상품권의 목적 외 사적사용 여부
- 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
-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상품권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 구매·사용내역 공개) 상품권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해당 연도 상품권 종류, 구매수량, 총 구매액, 사용내역 등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장수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고

	(단위 : 매,			부시		
	(단위	고		目み		
				담당 자		
			령 인	성명 (자필 서명)		
				소 산		
故		- 내 역		잔량		
관리대장		배부	,	시 라 라 라		
				明书科		
=			;	바루 일자		
뀨			·M-	수를		
상품권 구매·배부				구수 라		
₹0			,	후 수 자		
		매내역		구매처		
		子	는 다	(용 개 - (용 기 개 -		
[첫 전]				상품권 종류		
[별지 제1호서식]	부서명:			구 하 소		
到	十十		ফ্র	型		

[작성방법]

- 2. 수령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령인 자필서명이나 등기송달 등 수령 여부를 확인(수령인이 다수일 경우 별첨 처리 가능)3. 대리수령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사유 기재 1. 품명(종류) : 장수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기타상품권 등
- 4. 상품권의 금액 표기는 액면가로 함.

[별지 제2호서식]

<u>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u>

(부서명:)

□ 기간: . . . ~ . . . (단위: 매, 원)

연번	일자	상품권 종류	구매수량	총 구매액 (상품권 액면가)	사용내역

1. 제정이유

○ 상품권 구매 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구매·사용 및 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